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625
----------	-------

발의연월일 : 2019. 9. 24.

발의자 : 홍의표 · 소병훈 · 권미혁

송갑석 · 이재정 · 강창일

김민기 · 김병관 · 김부겸

김영호 · 김한정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함(안 제14조제4항).

##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1호), 홍의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4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2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2621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목적세”를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 목에 따라 특별자치시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재정 특례) ① ~ ④ (생략)</p> <p>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전출금은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u>목적세</u>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한다)의 1천분의 36으로 한다.</p>	<p>제14조(재정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 ----- ----- <u>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자치시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u>--.</p>